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55
----------	-------

발의연월일 : 2026. 3. 13.

발 의 자 : 정일영 · 조인철 · 서영석
박지원 · 안도걸 · 권향엽
손명수 · 민홍철 · 박지혜
김종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이 2명의 지인에게 각각 다른 일시, 장소에서 그 영상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다수인에 대한 상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유죄 취지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음.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함부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볼 것인데,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오히려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공연성 요건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

를 명시적으로 “제공”에 포함함으로써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사생활 침해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를 “제공[「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을 “정보통신망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 <u>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u> (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u>제공</u>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u>정보통신망</u>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시----- ----- ----- -----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u>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③ ----- ----- <u>정보통신망</u> ----- ----- ----- -----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 ⑤ (생 략)	----- -----. ④ · ⑤ (현행과 같음)
---	-----------------------------------